

의정부지방법원 2022. 8. 16 선고 2021나22173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2. 8. 16 선고 2021나221738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9. 14 선고 2020가단111215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

변론종결 2022. 7. 12.

판결선고 2022. 8. 16.

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. 9. 14. 선고 2020가단111215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청구취지 - 경기 가평군 C 대 266㎡ 중 제1심 판결문 별지 감정도 표시 9,10,11,14,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‘ㄱ’부분 26㎡ 지상 벽돌구조(흙벽돌) 일반목구조(경사지붕) 2층 단독주택을

철거하고, 그 토지를 인도하라. 같은 D 대 384㎡ 중 제1심 판결문 별지 감정도 표시

14,11,12,13,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‘ㄴ’부분 3㎡ 지상 벽돌구조(흙벽돌)

일반목구조(경사지붕) 2층 단독주택을 철거하고, 그 토지를 인도하라. 2020. 3. 10.부터 그 각

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위자료 상당 월 51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항소취지 -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취소. 그 해당부분 원고 청구기각(원고는 부대항소하였다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취하하였다).

이 유

제1심 판결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(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).

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박이규, 판사 황현찬, 판사 오성우